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일정 및 방식

2019. 9. 26.

사법행정자문회의

1.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일정

가. 정기회의 개최일에 관한 일반원칙 수립 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5조 제1항)

① 위 규칙 범위 내에서 정기회의 개최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1안] 구체적인 일반원칙을 정해놓는 방안
- [2안] 구체적인 일반원칙을 만들지 않고, 매 정기회의 때마다 다음 정기회의 일자를 정하는 방안

② 위 ①번 쟁점에 관하여 [1안]을 택할 경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놓을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1안] 정기회의 개최월까지 특정하는 방법 (예: 3, 6, 9, 12월)
- [2안] 정기회의 개최일까지 특정하는 방법 (예: 12월 둘째 주 수요일)

[참고 사례]

○ 대법관회의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2조(회의운영)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6조(기일의 지정 등)

①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다만, 해당일이 15일인 경우에는 22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



할 수 있다.

○ **전국법원장회의** ⇨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4월 두 번째 월요일
2. 12월 첫 번째 월요일

③ 적절한 정기회의 개최월 또는 개최일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분기별로 고려가 필요한 요소**

- [공통] 대법관회의는 통상의 경우 매월 전원합의기일(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최됨 ⇨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중요 대법원규칙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하려면 대법관회의 개최 전에 회의를 개최함이 바람직할 수 있음
- [1분기] **매년 2월 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자문을 하려면 **1월 초**에 자문회의가 개최될 필요 있음[특히, 법령상 법관인사위원회(법원조직법 제 25조의2)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예: 고법판사 보임)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 안전이 된 경우, 법관 정기인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가 늦어도 1월 초순경에는 열려야 하므로, 그 전에 자문회의가 개최되어야 함]
- [2분기] **매년 3월 초순**에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있고,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3분기] **7~8월** 하계 휴정기, **2년 후 9월에** 위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4분기]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첫 번째 금요일**에 전국법원장회의가 있고,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있음



● 고려가 필요한 주요 일정(달력식)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월	1	2 전국법관대표회의	3	4	5	6 전국법원장회의	7
	8	9	10 ← 제2차	11 회의	12 가능 일자 →	13	14
	15	16	17	18	19 대법관회의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1/1 신정	2 ← 제3차 회의	3 가능 일자 →	4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대법관회의	24 ← 설날 연휴	25
26	27 설날 연휴 →	28	29	30	31	2/1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법관회의	21	22
23	24	25	26	27	28	29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전국법원장간담회	6 전국법원장간담회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대법관회의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1	2	3	4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12	13 전국법관대표회의	14	15 제21대 총선	16	17	18



- 정기회의 개최일 예시(안)

- [1분기] 1월 첫 번째 목요일
- [2분기] 4월 두 번째 목요일
- [3분기] 9월 두 번째 목요일
- [4분기] 12월 두 번째 목요일

※ 각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목요일

나. 제2차 회의 등 이후 일정

▣ 위 가.항과 같이 논의한 결과 일반원칙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 일정은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회의(정기회의) 일정 ☞ 2019. 12. 개최함이 바람직

- 다른 회의 일정

- 전국법관대표회의: 12월 첫 번째 월요일 ⇨ 2019. 12. 2.(월)
- 전국법원장회의: 통상 12월 첫 번째 금요일 ⇨ 2019. 12. 6.(금)
- 대법관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 2019. 12. 19.(목)

- 12월의 다른 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중 하루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함

- 예정일자: ① 2019. 12. 10.(화), ② 2019. 12. 11.(수), ③ 2019. 12. 12.(목)

▣ 제3차 회의(정기회의 or 임시회의) 일정 ☞ 2020. 1. 초에 개최함이 바람직

- 정기인사 보직안에 대한 자문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 여부 결정 필요

- [1안] 2020. 1. 보직인사안 자문을 위한 임시회의 개최
- [2안] 보직인사안에 대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기초로 대법원장이 인사발령을 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2020. 1. 회의 미개최



- **법관 정기인사 보직안에 대한 자문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1월 첫째 주에 개최되어야 함**

- 2020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1월 첫째 주에 자문회의가 개최되어야 함

- 예정일자: ① 2020. 1. 2.(목), ② 2020. 1. 3.(금)

- 1분기 정기회의를 1월 초에 개최하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위 회의를 ‘정기회의’로 개최할 수 있고, 만약 2~3월에 별도의 1분기 정기회의가 필요하다면 위 회의는 ‘임시회의’로 개최함이 타당

- ※ 만약 1월 첫째 주에 자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법관 정기인사 관련 구체적 보직인사안’뿐이라면, 그 회의에는 비법관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음

- ▣ **제4차 회의(정기회의) 일정** 👁 **논의해볼 수 있음**

- **다른 회의 일정**

- 전국법원장간담회: 3월 첫째 주 금요일 ⇨ 2020. 3. 6.(금)

- 전국법관대표회의: 4월 두 번째 월요일 ⇨ 2020. 4. 13.(월)

2.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방식

- ▣ **개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은 별론)**

- ① 자문회의에 논의안건 상정 및 분과위원회 회부 ⇨ ②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 ③ 자문회의 보고 및 i) 토의, ii) 건의안 의결

- ※ 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논의안건의 특성상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연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보고와 추가보고를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음

- ① **자문회의에 논의안건 상정 및 분과위원회 회부**

- 각 논의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나눈 뒤 분과위원회 회부 여부와 보고 시한을 결정함



- ※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은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분과위원회에 논의안건을 회부할 수 있음(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 ⇨ 이러한 경우 의장은 논의안건 회부 사실을 위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아래의 '㉔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절차부터 진행함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 각 안건을 몇 개의 세부쟁점으로 나누어 연구·검토의 순서를 정하고, 보고서 작성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 분과위원회 토의를 거친 다음 개별 보고서를 적절히 취합하여 자문회의 제출용 보고서 작성
 - 자문회의에 제출될 보고서는 반드시 1개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 상이한 관점에서 작성된 복수의 보고서도 가능
- 연구·검토가 종결된 주제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각 안건에 대한 최종보고 시한을 정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함

㉔ 자문회의 보고 및 토의·의결

- 각 논의안건에 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받음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현황 및 문제점, 각국의 제도, 개별 논점에 관한 검토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되,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
 - 안건 설명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완성된 보고서 형태로 자문회의에 보고
 - 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으면 보완 연구를 하여 추가로 보고할 수도 있음
- 분과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안건에 관하여 토의를 거쳐 건의안을 의결함 <끝>